

#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6. 8 . 31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예결특위 상정 및 심사 의결

- 상 정 : 2006. 9. 13(제1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 및 의결 : 2006. 9. 13(제1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5년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임.

나.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출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계	5	989,622,000	979,543,980	10,078,020
일 반 회 계	4	973,662,000	963,592,630	10,069,370
특 별 회 계	1	15,960,000	15,951,350	8,650
공기업특별회계	1	15,960,000	15,951,350	8,650
기 타 특별회계	-	-	-	-

###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 4. 토론요지

- 생 략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8. 체계적 심사내용

- 생 략

### 9. 예비비 사용개요

(단위 : 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지 출 일	지 출 사 유	담당 부서
계	989,622,000	979,543,980	10,078,020			
1.호우 피해주택 복구지원	31,200,000	21,600,000	9,600,000	'05. 9.12	호우 피해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	원미구건축과 오정구건축과
2.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16,500,000	16,030,630	469,370	'05. 9. 8	보훈회관 운영 및 1급이상 상이용사 재활치료를 위한 공사	사회복지과
3.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경비 납부	265,962,000	265,962,000	0	'05.10.21	제4회 지방동시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 경비부담	자치행정과
4.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확대	660,000,000	660,000,000	0	'05.10.25	보육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보육료 확대지원	오정구복지과
5. 토지수용 이의 재결처분취소 판결 확정 및 이의재결 보상금	15,960,000	15,951,350	8,650	'05.10. 5	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이의재결 보상금 지급	하수과

# 200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

의안 번호	제15호
의결 년월일	2006. 9. 15 (제130회)

제출년월일 : 2006. 8. 3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의 규정에 의거 2005 일반 ·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임.

## 2. 승인근거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제2항

## 3. 주요골자

가. 예비비지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비비	구성비	지출 건수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비 고
계	967,765,078	116,024,252	12.0	5	989,622	979,544	
일 반 회 계	573,957,920	5,425,892	0.9	4	973,662	963,593	
특 별 회 계	393,807,158	110,598,360	28.1	1	15,960	15,951	
공기업특별회계	175,950,960	1,015,960	0.6	1	15,960	15,951	
상 수 도 사 업	70,338,501	1,000,000	1.4	-	-	-	
하 수 도 사 업	105,612,459	15,960	0.02	1	15,960	15,951	
기 타 특 별 회 계	217,856,198	109,582,400	50.3	-	-	-	
주 택 사 업	45,150	22,150	49.0	-	-	-	
의 료 보 호 기 금	2,375,943	-	-	-	-	-	
영 세 민 생 활 안 정	1,268,000	58,000	4.6	-	-	-	
새 마 을 사 업	579,908	-	-	-	-	-	
장 기 미 집 행 대 지 보 상	1,000,000	-	-	-	-	-	
경 영 수 익 사 업	9,660,000	-	-	-	-	-	
도 시 개 발 사 업	28,502,247	21,784,769	76.4	-	-	-	
교 통 사 업	52,928,903	392,874	0.7	-	-	-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121,496,047	87,324,607	71.9				

나.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 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 □ 일반회계

(단위 : 원)

사업명	지출 결정일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사유	지출부 서
계		973,662,000	963,592,630	10,069,370		
1.호우 피해주택 복구지원	'05 8.25	31,200,000	21,600,000	9,600,000	호우 피해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	원미구 건축과, 오정구 건축과
2.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 공사	'05 8.25	16,500,000	16,030,630	469,370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긴급 전기공사	사 회 복지과
3.지방자치단체선거 관리경비납부	'05 10.17	265,962,000	265,962,000	0	제4회 지방동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 경비부담	자 치 행정과
4.저소득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05 10.17	660,000,000	660,000,000	0	보육사업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보육료확대지원	오정구 복지과

## □ 특별회계

###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원)

사업명	지출 결정일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사유	지출부 서
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취소 판결 확정 및 이의재결 보상금	'05. 10.05	15,960,000	15,951,350	8,650	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이의재결 보상금 지급	하수과

###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사업명	지출 결정일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사유	지출부서
	해	당	없	음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내 용

제 120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